

시멘트·건설 관련 정책 및 법률 정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환경부가 지난 11월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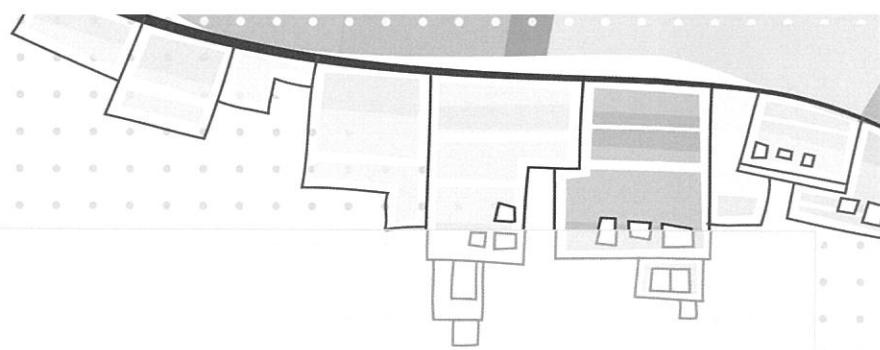
시행령에 따르면 제도운영의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무관청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되, 제도 집행 과정에서 각 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의 협의 기구를 통해 관계부처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토록 했다.

무상할당 비율과 관련해서는 시행초기에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함과 동시에 배출권 거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무역집약도·생산비용발생도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100%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이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조기감축 실적에 대해 1차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 수량의 3% 이내에서 추가로 할당할 수 있도록 했다. 상쇄 인정한도 및 범위와 관련해서는 할당대상 업체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인증을 거쳐 배출권으로 활용하도록 하되, 제출한도를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비율을 할당계획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해외 상쇄는 전체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1·2차 계획기간 동안 해외상쇄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관계부처 협의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무관청은 배출권 가격의 상승·폭락 등 필요시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과징금은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정했다.

앞으로 정부는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13.12,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할당계획(2014.6, 환경부 장관) 수립, 관련 고시제정, 배출권 거래소 지정·설치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 기술개발 사업 등에 대한 금융·세계상 지원 등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 절차 대폭 간소화, 허가기간 2~3개월 단축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노후주택지 정비를 효율적 추진하도록 맞벽 건축 대상 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일조기준을 주민 이용 편의 위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2년 1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심의를 접수 일부터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 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심의 절차를 새로이 두었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건축 허가 기간이 단축(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2~3개월) 되는 등 건축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한 맞벽 건축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현재는 인접 대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 합의만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구역까지 확대하여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일조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즉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하도록 개정하여 불법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건축물의 이용 편의도 높였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건축되는 단독주택 5만1,000여 건이 수혜를 보게 될 전망이다. 또한 높이 9미터 이상은 일조환경 보호를 위하여 높이의 1/2 이상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에서 띠우도록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건축허가 대상인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까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등 재해예

방 조치를 한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현재의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